# 2023년 고향사랑기금 설치 및 운용계획안

(의안번호 제2642호)

##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07. 04.

고성군수

나. 회 부 일 자 : 2023. 07. 05.

다. 상 정 · 의 결 일 자 : 2023. 07. 12. 기획행정위원회 상정 · 원안가결

#### 2. 제안이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및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등 고향사랑기금 사업 발굴 및 안정적 추진을 위해 고향사랑기금 조성

#### 3. 주요내용

- O.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설치 및 운용 계획
  - 수입: 151.350천원
    - 2023년 예치금 150,000천원(모금추정액) + 이자수입 1,350천원
  - 지출: 151,350천원(예치금 전액 예치)
    - 예치금 151,350천원
- O 사용용도
  -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 지원대상: 사회적 취약계층·청소년·지역공동체를 비롯한 복리 증진의 대상이 되는 고성군민

### 4. 관련근거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제11조

## 5. 의결요청(안): 붙임과 같음

#### 6. 전문위원 검토요지

- 본 계획안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고향사랑기금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기금 설치 및 운용계획안으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 본법」제8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임.
-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 규모는 1억 5,135만 원으로, 수입은 기타수입 1억 5천만 원과 이자수입 135만 원이고, 지출은 예치금 1억 5,135만 원임.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 각호의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하도록 그 사용 용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2023년도 모금한 기부금을 기금 재원으로 하여 2024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하여 2023년도 사업비지출계획은 사실상 없음.
-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자치 단체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관리·운용하기 위해 설치해야 하는 법적 기금 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고향사랑 기부금을 적정 관리 운용할 수 있도록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위원회 회의록 기재)
- 8. 토 론 : 없음.
- 9. 심사결과 : 2023. 7. 12. 원안 가결함.